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법예고의 예외)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li> <li>2.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li> <li>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li> <li>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li> </ol> <p>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①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li> <li>2. 입법취지</li> <li>3. 입법 주요내용</li> <li>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p>②입법예고문은 입법 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p> <p>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p>	<p>제5조(입법예고의 예외)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절차등을 규정하는 경우</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삭제</li> </ol> <p>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①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7월 1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6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9년 9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조례규정 중 상위법규와 중복되어 규제되고 있는 사항은 폐지하고 타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개정·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기금출납공무원 명칭을 “보험노정계장”에서 “의료보호담당주사”로 변경(안 제4조)
- 의료보호비 등 조정내역 통보기관의 명칭을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안 제7조)
- 상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한 상환방법·독촉 및 보호정지·징수방법 등의 규정을 삭제(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유재한)

행정절차법에 의거 규제완화 및 용어의 정리를 위하여 법규에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1차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거하여 계 제도를 담당주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4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회계공무원의 지정이 “보험노정계장”이던 것을 “의료보호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17조(지출)1항에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호비 등 조정내역 통보기관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공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고, 제8조(대불금상환 등)의 제1, 2, 3항은 의료보호법(제17조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1
------------	----

제출년월일 : 1999. 7. 1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사유

- 조례규정 중 상위 법규와 중복되어 규제되고 있는 사항은 폐지하고, 타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개정·정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기금출납공무원 명칭을 “보험노정계장”에서 “의료보호담당주사”로 변경(제4조)
- 의료보호비 등 조정내역 통보기관의 명칭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제7조)
- 상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한 상환방법·독촉 및 보호정지·징수방법 등의 규정을 삭제(제8조)

##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제2항
  - 국민의료보험법 제9조, 부칙 제6조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 제2항
- 입법예고
  - 구보 및 게시공고에 의한 입법예고('99. 6. 9 ~ '99. 7. 1)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안) 따로붙임

※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u>보험노정계장</u> 으로 한다. ②(생 략)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 ..... ..... ... <u>의료보호담당주사</u> ..... ②(현행과 같음)
제7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u> 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7조(지출) ① ..... ..... ..... ..... ..... <u>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u> ..... ..... ..... ..... ..... ②(현행과 같음)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삭 제>